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15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김태호 · 안상훈 · 이종배
우재준 · 박충권 · 박정하
김소희 · 유용원 · 정동만
백종헌 · 김종양 · 김성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점검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
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고시 등) ① 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에 관한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교 신설 또는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 학교급별 이행 현황의 조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2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고시 등) ① 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u></p> <p><u>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에 관한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u></p> <p><u>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교 신설 또는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u></p> <p><u>④ 그 밖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 학교급별 이행 현황의 조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p>

으로 정한다.